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-0083호

2019년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

중소기업 신기술(NET)의 상용화 촉진 및 성공적인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「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13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

1. 사업개요

□ **사업목적** :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(이하 "기업부설연구소 등"이라 한다)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신기술(NET)의 상용화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

□ **지원규모** : 22.15억원

○ **[과제1] 신기술 상용화 지원** : 15.45억원
- 과제당 155백만원 이내(10개 내외 지원)

○ **[과제2]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지원**(시범사업) : 6.7억원

① 미래유망기술 BM 연계 사업화 R&D 지원(6.2억원)
- BM개발 : 60백만원 (6개 × 10백만원 이내)
- 사업화 R&D지원 : 560백만원(4개 × 140백만원 이내)

② 중소기업 성장지원 협의체 구축 및 운영(0.5억원)
- 기업연구소의 전주기(TRL 1~9단계) 성장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기관 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※ 이후 별도 입찰공고 예정

[과제1] 신기술 상용화 지원

2-1. 신기술 상용화 지원

□ 지원대상

○ 대학·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(NET*)의 상용화 및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

* 신기술(NET : New Excellent Technology)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신기술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신기술

□ 지원내용

○ 신기술(NET)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&D 지원

-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문제 분석 및 신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관련 있는 대학·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문제 해결 지원
-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기술 업그레이드, 상용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개발, 시제품 제작 및 성능·신뢰성·현장 평가, 기술자문 등
- 신기술 적용 상용화완료 제품의 기능·성능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

□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금액	지원기간	정부지원금	민간부담금
신기술 상용화 지원	과제당 155백만원 이내	'19.3.1～'19.12.31 (10개월)	60% 이내	40% 이상

* 총 사업비의 60%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(매칭펀드 방식)하며, 민간부담금의 3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.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, 지원확정시 정부지원금의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

□ 신청자격

○ 대학·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(NET)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

• 신기술(NET) : 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신기술
• 기업부설연구소 등 :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·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들 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

□ 주관기관(신청기업)이 협력기관(대학·연구기관)을 사전 매칭하여 신청

○ 대학·연구기관의 범위

• 대학 :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
• 연구기관 : 국·공립연구기관,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,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,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른 시험인증기관,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연구기관

○ 협력기관

※ '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'(국번없이 1379)를 통해 협력기관 매칭관련 문의가능

○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: 협력기관 매칭, 기술애로 등 기업의 고민사항을 원스톱 지원센터 상주 전문위원이 분석·진단하여 적합한 연구기관을 연결함으로써 해결
○ 문의 : 전화 : 국번없이 1379, 온라인 : www.sos1379.co.kr
- 방문상담 :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(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산기협회관 1층)

□ 평가기준

○ 신기술 상용화지원 평가기준

구 분	세부항목	배 점
사업계획의 타당성	·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·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· 공공연구성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·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	30
기술성 및 개발능력	· 보유 신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· 자체연구개발 역량 · 참여기관(주관, 협력) 및 과제책임자·부문책임자의 역량	20
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	·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· 시장진입 가능성 · 상용화 실현가능성 · 경제적 파급효과	50
합 계		100

※ 필요 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보완·조정될 수 있음

○ 가점기준

-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경우 마일리지 1,000점당 평가점수 1점 가점(최대 5점)
- 연구원 신규채용시 최대 2점 가점(1명 채용시 1점, 2명 이상 채용시 2점)
- 최근 3년간 정부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경우 5점 가점

[과제2]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지원

2-2.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지원 (시범사업)

□ 지원대상

○ 미래유망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(전담부서 포함)

* 해당 중소기업은 반드시 산학연 협력이 가능한 형태(BM개발팀 등)로 구성해야 하며, 주관기관은 기업(기관)이 수행

□ 지원내용

① **(미래유망기술 BM 연계 사업화 R&D 지원)** 혁신성장동력분야*의 미래유망기술**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연구소 BM연계를 통한 사업화 R&D를 지원함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연구소의 혁신역량 강화 기여

- 1단계 : BM개발(기획 단계), 2단계 : 사업화R&D지원

* 주관기관은 기업이 수행해야 하며, 1단계 참여기업(기관)에 한해 2단계 사업 참여 가능

** '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'에서 지정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중 R&D 집중도가 높은 차세대통신, 지능형반도체, 헬스케어, 혁신신약, 드론, 지능형로봇 6개 분야

*** 미래기술마당에 등록된 공공연구성과 중 기업연구소가 활용 가능한 유망기술로 분석된 기술 활용. 미등록 기술의 경우 미래기술마당 등록후 사업지원 가능

② **중소기업 성장지원 협의체 구축 및 운영**(시범사업) 기업연구소의 전주기(TRL 1~9단계) 성장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기관 간 협의체 구축 및 운영

* 이후 별도 입찰공고 예정

□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금액	지원기간	정부지원금	민간부담금
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지원	- (1단계) BM개발 : 10백만원 이내(6개)	3개월 이내 (2~3개월)	100% 이내	-
	- (2단계) 사업화 R&D지원 :140백만원 이내(4개)	~'19.12.31	60% 이내	40% 이상

*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지원 : (1단계) BM개발(기획단계)에 참여한 기업(기관)에 한해, (2단계) 사업화 R&D지원사업 참여 가능함. 기업부담 매칭금 및 정부반납 기술료는 기획단계(1단계)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(2단계) 사업화 R&D지원때 반영

** 총 사업비의 60%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(매칭펀드 방식)하며, 민간부담금의 3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.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, (2단계)지원확정시 정부지원금의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

□ 신청자격

○ 미래유망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(전담부서 포함)

* 해당 중소기업은 반드시 산학연 협력이 가능한 형태(BM개발팀 등)로 구성해야 하며, 주관기관은 기업(기관)이 수행

** 미래기술마당 등록 기술을 활용하거나, 미등록 기술의 경우 과제신청 시 미래기술마당 온라인 사전접수 의무(미래기술마당 등록기술 샘플, [첨부 4] 참조)

※ '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'에서 지정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중 R&D 집중도가 높은 **6개 분야**(차세대통신, 지능형반도체, 헬스케어, 혁신신약, 드론, 지능형로봇)**만 지원 가능**

※ 지원 분야에 대한 적합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인

· 미래기술마당 : 출연(연), 대학 등 사업화 유망기술과 기업정보, 기술시장정보,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서 산업계로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서비스(기술사업화 정보, 기술매칭 및 기술사업화 지원)

○ **(필수 전제조건)** (2단계)사업화 R&D지원사업 과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(1단계) BM개발 사업에 지원하여 평가를 통해 우수 BM으로 선정되어야 함

- (우수BM 연계)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BM에 대해 '사업화 R&D 지원' 사업으로 연계

<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지원과제 선정 절차(안)>

사업 공고		BM개발		우수 BM 선정		사업화 R&D 지원		성과창출
'19. 2월 (예정)	▶	6개 과제(과제당 10백만원 이내)	▶	BM개발 평가	▶	4개 과제(과제당 140백만원 이내)	▶	·매출 증대 ·일자리 창출 ·신시장 창출
		2~3개월		'19.5~6월		'19.6~12월		'19.12월

* 추진일정은 사업수행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주관기관(신청기업)이 협력기관(대학·연구기관)을 사전 매칭**하여 신청

○ 대학·연구기관의 범위

- 대학 :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
- 연구기관 : 국·공립연구기관,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,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,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른 시험인증기관,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연구기관

○ 미래기술마당 과제접수

-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지원 사업 : 미래기술마당 등록 의무
- 기술신청을 위해 미래기술마당(http://md.compa.re.kr) 회원가입 및 기술등록 후 과제 신청 가능
- 문의 :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유망기술발굴팀(02-736-9280, 9281)
  - 온라인 :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(https://www.compa.re.kr/)

□ **평가기준**

○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지원 평가기준(시범사업)

① BM 개발(미래기술마당 등록 기술 활용)

구 분	세부항목	배 점
사업계획의 타당성	·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· BM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· BM고도화 및 사업화 타당성 검증 방법의 적절성 · 공공연구성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·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	30
기술성 및 개발능력	· 제안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· 자체연구개발 역량, 기술적 역량 및 완성도 · 수익창출모델의 적정성 · 참여기관(주관, 협력) 및 과제책임자·부문책임자의 역량	20
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	· 기술사업화 가능성, 시장진입 가능성,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· 상용화 실현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· 경제적 파급효과	50
합 계		100

※ 필요 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보완·조정될 수 있음

② BM 연계 사업화 R&D지원

구 분	세부항목	배 점
BM 타당성	· BM타당성 검증 방법의 적절성 · 신제품·서비스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· 사업화 추진주체(주관·참여기관, 참여기업 등 컨소시엄)의 역할분담 적정성 · BM타당성 검증의 전·후 변화(BM사업화 시나리오 제시 등)	30
사업화 타당성	· 사업화 목표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· 수익창출모델의 적정성 및 구체적 사업화 계획 ·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·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	20
기술성 및 개발능력	· 제안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· 자체연구개발 역량, 기술적 역량 및 완성도 · 참여주체(주관/참여기관/참여기업 등)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연구개발 역량	20
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	· 기술사업화 가능성, 시장진입 가능성,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· 상용화 실현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· 경제적 파급효과	30
합 계		100

※ 필요 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보완·조정될 수 있음. (1단계) BM개발 참여 기업(기관)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, 작성양식은 (1단계) 참여기업에게 추후 통보 예정

○ 가점기준

- 연구원 신규채용시 최대 3점 가점(1명 채용시 1점, 2명 채용시 2점, 3명 이상 채용시 3점)

3. 선정평가

□ 선정절차 및 내용

사전검토		발표평가		종합토론평가
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	⇨	과제책임자 발표평가 · 지원대상 후보과제 추천	⇨	지원대상 최종선정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	평가위원회		평가위원회

* 추진일정은 사업수행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화R&D지원은 BM개발 참여과제 중 평가를 통해 선정(산학연금 기술사업화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위원회 구성)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**신청기간** : ’19. 2. 13(수)～3. 13(수) 18:00까지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□ **신청방법**

○ 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사전 매칭하여 신청

○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(www.koita.or.kr) 공지사항

○ 접수처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층 기술협력팀 이종민 선임과장

(06744,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(양재동 20-17))

□ **제출서류**

순서	제출서류명	제출부수	비 고
1	신청공문(주관기관장 명의)	원본 1부	기관 자율양식
2	연구개발과제계획서(신청용)	원본 1부	첨부 1
3	가점신청서(산학협력 마일리지)	원본 1부	첨부 2
4	가점신청서(연구원 신규채용)	원본 1부	첨부 3
5	과제 중복성 검토결과	원본 1부	국가R&D사업관리서비스(http://rndgate.ntis.go.kr)의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결과 출력물 제출
6	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	원본 1부	최근 2개년도 확정 재무제표
7	사업자등록증	사본 1부	-

5. 추진일정

일 정	세 부 내 용
~'19. 3. 13	· 신청서 접수 마감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~'19. 3. 20	· 선정평가 실시 및 지원과제 선정
~'19. 3. 26	· 이의신청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협약준비
'19. 3. 27~	· 협약 및 과제수행

※ 상기 일정은 접수결과 등에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기술료 납부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규정 제38조(기술료 징수) 및 사업 관리지침 제 29조(기술료 징수)에 따라 기술료 납부

7. 지원제외 사항

□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,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※ 국가R&D사업관리 서비스(http://rndgate.ntis.go.kr)에서 개별 확인 후 신청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○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
8. 기타사항

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까지 가능

※ 관련근거 :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32조

□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,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및 본 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

9. 관련 법령

□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

□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

10. 문의처

□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(☏ 1379)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(☏ 02-2110-2473)

□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유망기술발굴팀(☏ 02-736-9280, 9281)

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이종민 선임과장, 장지원 사원
(☏ 02-3460-9062, 02-3460-9065)

※ 신청서 접수여부, 제출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지원 (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)

□ **(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지원 사업)** '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'에서 지정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중 **R&D 집중도가 높은 6개 분야**(차세대통신, 지능형반도체, 헬스케어, 혁신신약, 드론, 지능형로봇)에 **한해 지원 가능**

기본방향	
	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**맞춤형 전략 마련** ②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**전주기**(발굴·지원·평가) **관리체계 정착** ③ 혁신성장동력의 **국민체감 확대**

혁신성장동력분야					
지능화 인프라	**빅데이터(D)**		**차세대통신(N)**		**인공지능(A)**
	빅데이터 개방·활용 		5G, IoT 상용화 		AI 핵심기술 개발 
스마트 이동체	**자율주행차**			**드론(무인기)**	
	레벨3 자율주행 			공공용·산업용 무인기 보급 	
융합 서비스	**맞춤형 헬스케어**	**스마트시티**		**가상증강현실**	**지능형로봇**
	개인맞춤 정밀의료 	도시문제 저감 		개별산업과 VR/AR 융합 	의료·안전용 서비스 로봇 
산업기반	**지능형반도체**	**첨단소재**		**혁신신약**	**신재생에너지**
	AI용 반도체 개발 	항공부품, 자동차 경량화 		후보물질 100개 개발 	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 ('17 7.0%→ '22 10.5%→'30 20%)

정책과제			
	1 맞춤형 전략	2 전주기 관리	3 국민체감 확대
	1 조기상용화 2 원천기술확보	1 신규분야 발굴·기획 2 사업·추진체계 개편 3 성장동력 분석·평가	1 실증·시연·체험 증대 2 재난·안전 활용